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5.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
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3)
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0)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4)
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3)
10.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4)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3)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14.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1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16.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1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18.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20.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21.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22.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23.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24.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25.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26.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27.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상정된 안건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3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3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3
5.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 16
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3) ... 16
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0) 16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4) 16
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3) ... 16
10.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4) ... 16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3) ... 16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24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24
14.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27
1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27
16.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27
1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27
18.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28
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 28
20.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28
21.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28
22.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28
23.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28
24.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28

25.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28
26.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28
27.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28

(14시21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범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직전 소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소위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요약한 내용하고 그에 대한 법안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주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인됐고 또 환수된 친일재산과 앞으로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만료 당시에 김창국 조사위원장의 인터뷰 자료를 요청해서서 자료를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위자료에도 내용을 요약해서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무부에서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에서 법무부 의견은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신설 시의 예상 환수 대상 재산·규모 등에 대해서 국가소송과장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국가소송과장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부터 먼저 배포해 주시지요.

성함이랑 말씀해 주시고 진술해 주십시오.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법무부 국가소송과장 국진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소위의 쟁점을 중심으로 1기 위원회 운영 및 성과, 2기 위원회 필요성, 2기 위원회 출범 시 예상 환수 대상 재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은 위원회 발간 백서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1기 위원회 운영 및 성과입니다.

조직·예산·활동은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하단 성과입니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4년간 총 2373억 원 상당의 귀속결정 및 확인결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귀속결정은 친일행위자 후손이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고, 확인결정은 후손이 친일재산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대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008년 11월에 대법원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되어야 하며, 대신 친일재산을 처분한 후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업무 개시 시점이 2006년 7월인데 위원회는 2008년 11월 21일에 최초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친일재산 매각 수익의 국가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위원회 운영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친일재산 확인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쪽, 2기 위원회 필요성 검토입니다.

1기 위원회가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한 이후 법무부는 소송 관련 업무를 승계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95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확정되었고, 이로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이 마무리되어 1기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2373억 원 상당은 사실상 환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친일재산에 대한 제보와 민원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광복회·지자체 등으로부터 14~26년 총 263필지 토지에 대한 환수요구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민원의 개별적 검토를 통해 관련 증거가 구비된 85필지만 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는 자료 부족 등으로 소 제기를 유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85필지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1기 위원회 이후 새롭게 등장한 판례 법리에 따라 1기 위원회 당시에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현재는 친일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기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이후에 처분한 매각 수익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법 시행 이전의 매각 수익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일행위자 후손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처분한 매각 수익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환수 기간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1기 위원회는 친일행위자가 본인 명의로 사정받은 재산만을 친일재산으로 보았고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는 친일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친일행위자 자녀 명의로 사정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친일행위자 본인 명의 토지 외에 명의신탁재산까지 환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3쪽, 2기 위원회 출범 시 예상 환수 대상 재산입니다.

1기 위원회의 잔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단 표의 1·2·3항과 같이 2010년 김창국 위원장의 인터뷰 당시에는 일부 잔여 업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수가 완료되어 추가 환수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가운데 당구장 부분 관련해서 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를 기간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성과와 무관하게 4년의 활동을 전제하였고 2009년부터는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기 위원회 출범 시 과연 얼마나 환수가 가능할지가 문제 되는데 법무부는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는 최소 3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접수 민원 관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263필지에 대한 환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 자료가 명백한 85필지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하였고 73필지에 대하여는 귀속 불가 판단을 하였으며 나머지 105필지, 공시지가 325억 원 상단에 대하여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325억 원 상단에 대하여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추가 환수 예상액 1500억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작년 8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소위 이후 연구소 측에 1500억 추산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고 연구소 측으로부터 조사위에서 환수하지 못한 재산이 시가 기준 1500억이고 조사위가 발견하지 못한 친일재산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 토지를 특정하여 예상액을 산정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기 위원회의 경우 민원 제보에 의해 귀속·확인 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포상금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민원 제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수 기간 및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환수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확립된 판례와 개정안에 따른 명확한 매각대금 환수 규정 등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청산할 것 청산하고 환수해야 될 것은 환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이게 보니까 1기 때 2300필지를 환수했고 신규 접수 민원에서 105필지예요. 그러면 2300 대 105 하면 2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친일 명부 따지고 친일 명부로 해서 자손들 토지 쪽 이렇게 볼 텐데 환수기간 확장하는 것도 이미 1기 위원회에서 한 2300필지는 금방 스크린될 것 같고요. 새로 하는 105필지……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기본 자료가 이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발표하신 분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1기 위원회 할 때 이미 친일 인명부가 있었을 거고 그들의 재산을 쫓 추적해서 다 조사를 했고, 이런 기초 조사는 1기 때 다 완료가 된 거지요?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중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처분된 것을 중점적으로 봤을 거고. 그렇지요?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초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것을 스크린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번 환수 범위 확장 부분은, 이게 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도. 그래서 저는 일단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했는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이것 새로 만들면서 또 4년 하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 저희가 논의하면 되지요.

○나경원 위원 저는 활동시한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활동시한이 이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현재 4년 하고 2년 연장, 한 번 연장하는 것으로……

○**나경원 위원** 그런데 차라리 2년 하고 2년, 2년 정도 하는 걸로 해 보면 어떨까 해요.

○**소위원장 김용민** 2년 하고 2년 두 번 연장이요? 그러니까 연장을 두 번까지 가능하게?

○**나경원 위원** 일단 연장 한 번까지 가능하게 해 줘야지……

○**소위원장 김용민** 의견 말씀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것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해 주면서 똑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업무량으로 봤을 때 2년 하고 한 번 연장하고 또 그때 가서 남아 있으면, 필요하면 국회에서 더, 새롭게 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위원님 말씀에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도 올해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그런 정도 업무량을…… 일단 기초 자료는 다 준비돼 있다, 새롭게 또 친일 명부를 다시 확장하는 것 아니면 이미 기초 자료는 다 조사가 끝났으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차관님,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년으로 하면 업무가 가능한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 기간을 2년으로 둘 경우에는 현재 2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친일 가계도, 462명에 대한 가계도가 있는 상태고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례 2개로 인해서 더 추가로 환수해야 될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의 난이도가 사실 1기보다는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에는 구성해서 운영한 다음에 거의 한 1년, 1년 반 지나면 정리해야 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서 안정적인 활동기간은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항상 만들어지면 기구 만들고 기본적으로 뭐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니까 2년 하고 2년 연장하면 조금 더 콤팩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 만들어 주는 위원회를 만든다…… 또 이렇게 해 주시면 민주당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콤팩트하게 실무적으로 일하는 위원회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조배숙 위원** 예.

보니까 1기 위원회 운영하는 데 4년간 총예산이 237억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237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성과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

서 함께 2373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한 10배 정도 되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과거사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제까지 과거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파헤치고 다시 하고, 물론 부당한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률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지 지금 AI 시대인데 계속 과거의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시간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종결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물론 업무, 판단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디지털화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속도는 좀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수 대상 재산 규모가 얼마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325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 만큼 활동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고 그때 좀 안 됐다 싶으면 한번 더 연장하는, 그래서 총 4년으로 해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여기 김창국 전 초대 위원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3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대해 최초로 그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됐다. 형사적 소급효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사유재산권의 소급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사유재산권도 소급입법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최초의 첫 입법례였던 것 같은데 역사적인 필요성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크게 한번 양보했던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할 것 중에 집단소송법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학계 교수님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소급효 부분이거든요.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검토하는 이 법들 중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안 이것을 2년이든 4년이든 연장해 가지고 새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게 최초의 소급입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나중에 집단소송법 할 때는 소급효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 안에 보시면 법안상에는 연장하는 것이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저는 4년이든 또는 2년 플러스 2년이든 일단 4년을 한도로 해 가지고 2기 위원회가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오늘처럼 다시 법안을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법안 자체에 재적위원들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기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최소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지금 현행법이, 원래 법이 4년이었고요 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도 기본 활동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1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본 4년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원래 처음에 다시 2기가 애기된 게 제가 저번에도 질문했던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기존에 1기에서 했던 것을 후속으로 법무부에서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보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판례 문제는 좀 차치하고라도 제보가 이루어지는데 1기가 실제로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조사 권한이 없어서 실제로 효율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2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 법안이 애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답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그 판례 부분 빼고도 조사해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 판례가 새로 인정된 것으로 해서 또 새로 조사할 것이 더 많아진 것은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친일 명단 리스트 작성하는 거 그런 것에 들었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판례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보기에선 이게 오히려 실무적으로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보된 것도 실제로 이게 친일재산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도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짧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이 구성되고 새로 자료 받아서 검토하고 하면 공식적인 조직은 기본적으로 몇 개월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일단 원안처럼 4년은 기본으로 하고 한 2년 정도 승인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물론 2년, 2년 더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4년에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소위원장 김용민**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포상 제도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생각해서 이런

규정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신고포상금이 국가의 환수 금액보다 많을 리는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되는 조항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방안이 타당치 않은가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는 이견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기간 관련해서 여기 오늘 보내 주신 자료 1페이지 밑에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한 것 07년도에 총 22건, 08년도에 50건, 그런데 09년 3년 차부터 101건, 4년 차에 92건 이렇게 돼 있어서 2년만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제대로 밝히기가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4년은 보장하되 또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연장함에 있어서 좀 더 고려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저는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처음 조직이 출범할 때 2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4년 정도는 해 주되 문제는 2년 더, 저는 4 플러스 2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합의가 될 여지가 좀 있다면 차후에 2년 연장하는 것은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말 필요한지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국회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놔두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4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국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신데 위원님들 어때습니까?

○**곽규택 위원** 보통 우리 위원회에서 일몰기간 같은 것을 정하면 그 법이 일몰기간 될 때쯤 자동으로 해서 법안 연장하는 개정안들 나오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보통 의원들이 발의를 하지요.

○**곽규택 위원** 그게 국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연장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2년도 있는데 3년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이 4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요.

○**김기표 위원** 원래 8년에서 4년으로 많이 양보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그러면 차관에게 한번……

차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로 하면 괜찮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또 2년은 국회의 승인, 내가 진짜 많이 썼다.

○**곽규택 위원** 3년 동안 바짝 해야지.

○**나경원 위원** 바짝 하라고 그래요, 바짝. 그런데 3년 하고 2년 국회 승인하면 5년 되지요.

○**김기표 위원** 홀수는 좀 이상하지.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에서 이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신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장 부분에 대

해서는 어느 기간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실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 합니다.

○나경원 위원 국회 승인하고 3년 하고 해요. 그러면 되잖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3년 하고 2년을 늘릴 때 국회 승인을 얻자라는 게 지금 나 경원 위원님 주장이신데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 일몰 규정 다 국회의 승인을 얻는데 뭐.

○김기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4년으로 했을 때 연장하면 2년이고 3년으로 했을 때 연장하면 3년으로 하지요. 그것을 선택을 하세요.

○나경원 위원 2년 하면 되지. 뽕세계 일들 좀 하라고 그래요, 나라 예산도 없는데.

○김기표 위원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지요.

○곽규택 위원 조삼모사 같은데.

○김기표 위원 아니, 조삼모사가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 법으로는 재적위원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연장하는 구조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의 대체적인 공감대는 국회가 승인을 하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법안을 그렇게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한 예들이 좀 있지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던 예들이?

○전문위원 최기도 그게 무리한 입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 것 많이 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 문구들이 지금 작성 준비가……

○전문위원 최기도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위원 최기도 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국회로 하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곽규택 위원 이 소관 상임위가 우리인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법사위 법이라 우리 법사위입니다.

○곽규택 위원 아, 귀찮은 것……

○소위원장 김용민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법사위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또 왜 그래요.

○소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에, 법사위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5년 되면 다시 불러 올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에?

○박균택 위원 위원장 하시면서 승인해 주세요.

(웃음소리)

○곽규택 위원 3, 2로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3년, 2년 하지요. 그리고 잘하면, 일이 많으면 나중에 새로 법을 만들어

서 또 2년 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큰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3년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차관님, 3년 하고 2년 소관 상임위에서 연장하자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2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총 3년 플러스 2년의 기간 내에 위원회가 최대한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2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되는 것 같으니 그 정도로 이 부분 정리를 하시지요. 그것 말고 쟁점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해서 현행법은 재적위원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으로 다 대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를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현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는 뒤에 대통령 승인인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하고 소관 상임위 승인으로……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승인을 빼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 승인.

○소위원장 김용민 대통령 승인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 승인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기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가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4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3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시고.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해야겠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안대로 9명 모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현행법과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쟁점이 되었던 게, 조금 전에 박규택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27조에서 포상

금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빼도 된다고 법무부도 말씀하셨고 다른 법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위원 최기도 심사자료 10쪽의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박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심사자료 10쪽입니다.

현행법에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요 제정안에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나경원 위원 이 포상금 주는 거요 어떤 법이 이런 포상금을 주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가보안법?

○전문위원 최기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는 많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왜 1기에서는 포상금을 안 줬을까? 이게 포상금 제도가 잘못하면 사실은 또 다른 논란이 될까 봐. 지금 이게 친일재산 환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범위를 보면 사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반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용민 82페이지, 83페이지에 안이 있는데요.

○나경원 위원 어떻게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김용민 포상금 지급이 있고 포상금 환수 규정도 두고 있어서.

○나경원 위원 아니요, 포상금 지급·환수 말고 이 위원회 업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서 재산 환수만인 줄 알았더니 위원회 업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도 있네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나경원 위원 이렇게 되면 포상금하고도 관련되는 것 맞습니까? 나는 지금 이 제목만 보고 재산 환수만인 줄 알았더니 이것까지 다 하면 또 여기다 새로 포상금까지 줬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업무가 1기 위원회 업무랑 같나 보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위원회 업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하는 거고……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또다시 포상까지 해 가면서 하면 이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아니다부터 또 다른 갈등이 될 거고 포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포상 제도까지 두는 것이 맞을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결정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으로 끝내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많이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고를 한다고, 그게 계속 갈등이…… 이게 사실 재산 환수 정도라서 이

미 세팅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포상금까지 준다? 나는 사실 이 업무 범위에 1번까지 넣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제목하고 좀 다른데 그런데 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난 포상까지 주는 거에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괜히 불필요한 갈등, 언제까지 친일·반일 할 건지 그러면 또 공산주의자도 척결하자고도 할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추가설명……

○소위원장 김용민 답변 먼저 한번 들어 보고 할까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상자 선정과 재산 환수 관련된 제보가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원안대로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시일이 상당히 제기되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마무리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료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도 포상금 제도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남용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을 통해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전문위원, 말씀……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수정의견 마련 내용은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이나 친일재산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관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포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범위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전현희 위원님 먼저.

○전현희 위원 원래 우리나라 법체계상 이것도 일종의 공익신고인데요. 공익신고를 통해서 국고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또 사회정의에 기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일행적자 재산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신고를 통해서 친일재산으로 국고에 환수 조치를 하고 이득이 생길 경우에는 포상하라는 것은 원칙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규택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박규택 위원 포상금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안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강일 의원안이나 김용만 의원안처럼 친일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환수한 금액의 몇 %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 이강일 의원안은 0.1% 딱 정액을 주게 돼 있고 김용만 의원안은 5% 이내에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정하면 어차피 친일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실제로 환수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거니까 논란의 소지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한 신고하려고 직업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조금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표 위원** 결국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겠지요, 이거는.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가 이런 안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혹시 지금 광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령에 이와 같이 매각하거나 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좀 상한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상금 지급 재량 규정을 두고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종합해서 입법 형식상으로는 지금 법무부의 수정안대로 하되 다만 실제 대통령령을 만들 때에는 방금 광규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럴 생각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의결하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응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대부분 이와 같은 포상금 규정 관련해서 그와 같은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법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차관님, 1기 활동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지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면 1기 때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1기 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기들도 어떤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그런 우려,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고요. 1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를 한번 추산을 해 봤는데요. 4년간 산정을 해 봤을 때 약 7200만 원 정도 규모로 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 금액이 아주 크거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1기 때 이거를 한번 산정해 보니까 포상금이 전체 7200만 원이라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72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1기 때 한 것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어떤 기준이었는데 7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산정 기준은 담당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포상금 예상 비용 추계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제를 1기 위원회와 2기 위원회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1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모두 포상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약 7200만 원, 연평균 약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산식은 1기 위원회의 4년간 귀속·확인 결정이 2300여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 제보는 약 20%, 135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누적 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이강일 의원안처럼 0.1%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4년간 720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김기표 위원** 별문제 없겠네요.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법들도 논의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그래도 수정안에 결국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대통령령 정할 때 그 부분 또 충분히 정리하고 또 필요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법사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면 쟁점들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포상금액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준 정도면 충분히 아마 될 것 같고 그것을 사전에 한번 또 보고를 받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3년 그리고 플러스 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방식은 국회 소관 상임위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

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3)

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0)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4)

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3)

10.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4)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3)

(15시04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소위자료 목차를 보시면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의 중요한 쟁점인 이 법의 관장기관부터 총괄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쟁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련된 법률안은 7개고요 6개는 제정안이며 1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임의에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중요 사항은 관장기관입니다. 이 사무를 관장할 곳을 대법원으로 정하실 건지 법무부로 정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세부 내용들은 시읍면의 장에 위임해서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처럼 시읍면에서 처리할 것이지만 총괄기관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출생등록신청을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출생 후 30일 이내 할 것인지 90일 이내 할 것인지, 원칙적인 신청 의무자가 부·모인데 그다음에 동거하는 사람 그다음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의 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보 금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지금의 법안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무 조항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세부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입법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체류지가 있지 않아서, 체류지가 있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출생아동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받아서 교육이나 복지,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생부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모가 외국인이면서 혼인의 관계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그 자녀는 외국인으로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기본권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으로 할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에서도 2011년·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국적을 불문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 대상이나 체계 등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법을 만드시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관장기관입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게 하실 것인지 법무부로 관장하게 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김기표 의원안과 서미화 의원안은 법무부로 그리고 나머지 안은 대법원으로 관장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을 시읍면의 장 외 외국인관서의 장도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출생등록사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부 관련 조직은 직제 관련 법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둘 때에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장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출생통보, 출생등록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시읍면의 장이 하게 돼 있는데 관장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읍면에서 하는 각종 신청과 여러 가지 수리·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불복신청이 가능한데 이 불복신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 법의 관장기관은 직권등록 허가라든가 불복절차 등을 비롯해 전국 시읍면에 출생등록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바 지방조직이 있는 국가기관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마지막에 발의된 김기표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외국인아동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위당이 되어 있고요. 외교 직원의 가족 일정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은 출생 후 30일, 90일, 김기표 의원님 안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아동 출생 체류지에 가까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고요. 그다음 2순위자는 동거하는 사람, 다음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남희·서미화·이강일·주호영·강경숙 의원안에는 혼외자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혼외자인 경우에는 ‘모’만이 출생등록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공적 기관으로서 검사, 지자체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사실 통보 및 직권등록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의료기관의 장이 13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것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신청과 크로스체크 하도록 하는 제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김기표 의원님 안은 심평원을 경유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의원안에서는 의료기관장이 바로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아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아동 같은 경우는 그 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킬지, 그리고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외국인아동의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이 법안 등 3개 법률로 규율됩니다. 그래서 법률 간의 중복 규율 부분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은 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무자 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로 되어 있는데 ‘부’라면 민법에 따른 법적 ‘부’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부는 제외됩니다. 생부 같은 경우 ‘동거하는 사람’에 표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생부는 신청자에서 제외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의원님 안에서는 혼외자에 대한 출생등록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최근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에 따른 친생자 추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2순위자는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동거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 친족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생사실 통보와 직권등록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과 같이 심평원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기표 의원안을 보시면 의료기관이 통보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출생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출생을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과 달리 ‘임시식별번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모의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차 없는 경우에는 임시식별번호를 의료기관이 부여해서 모를 특정하도록 김기표 의원 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청을 받게 되면 시읍면의 장이 출생등록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생성할 때에는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약간 비슷한 유사 개념인데요.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출생등록 사무는 전산정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생등록부가 형성이 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데 외국인 아동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나 지자체,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도 증명서 발급 신청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부 폐쇄 조항입니다. 사망, 실종, 부재선고 등이 있을 때 출생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이강일 의원안과 주호영 의원안에는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으로 폐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김기표 의원안에는 등록기준지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있는 등록기준지는 등록부의 작성·관리라든가 신고사항의 처리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이 정정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통보할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범위에 있어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 그래서 어떤 친모에 관한 사항도 신청인이 신청하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사망인데요.

외국인아동이 사망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 친족 또는 동거인입니다. 출생등록 신청자와 연계된 부분이지만 좀 더 넓게 다른 기관도 넣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도 넣을지를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고를 한 외국인아동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벌칙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 사람을 발견하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법에다가 ‘통보하면 아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면제 조항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실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칙 부분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김기표 의원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 시행 당시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아동이 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출생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법문을 잘 보시면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이라는 법문 자체가, 워딩 자체가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아동’ 이렇게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출생등록신청을 어디에 하실지를 장소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본칙과 같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이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교육 등으로 국내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아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외국인아동의 출생 사실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수차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받아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도부터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고,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안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국인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대안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김기표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하게 변화된 점은 법무부 관장 시 출입국의 체류·단속 업무와 모순·충돌된다는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금지 규정 등을 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사실 기록을 통해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행정 및 인권보호의 영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이 이를 담당함으로써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안은 대법원을 관장기관으로 하는 법률안과 법무부를 관장기관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관장기관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

정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출생등록 업무를 오랫동안 관장해 온 사법부 관점에서 법률상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한 조문이 법무부를 관장으로 하는 법률안에 들어 있고 또 몇 가지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 쟁점에 관해서는 부문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김기표 의원님 안이 사실상 법무부 정부안인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출생신고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다 해 오던 업무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법무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법원행정처하고 논의를 해서 가지고 통일된 안으로 내주시는 게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관할하느냐가 사실 입법정책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곳에서 함께 관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이나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 신분 관계를 창설하는 사법적 영역이 국민의 출생신고 등입니다만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하는 인권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도 법무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이해를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도 말씀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가 등록돼서 인권적 지위를 보장받는데 자신이 등록하는 관청이 법무부인지 법원인지 관심 없을 겁니다. 신속히 등록되어서 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까 차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주셨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검토보고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로 같음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심사 때 말씀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그 안이 법무부랑 아직 논의 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논의는 아직 안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시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기관이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김동아 위원** 처장님 의견을 여기서 듣든지 아니면 따로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논의를 하고, 저희도 그 논의 내용을 들어 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그 의견을, 법무부는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던 안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지금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아니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나중에……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한 가지만 좀……

○**소위원장 김용민** 꼭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약속했던 시간이 있어서요.

○**조배숙 위원** 지금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체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실상 부모는 불법체류 했는데 아이들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 이것을 묵인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논의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음에 자료 좀……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관련해서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님,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출생하고 있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좀 조사된 게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생아가 태어나서 12시간 내에 B형 간염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주사를 맞는 외국인 아동수를 약 5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전체 출생자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규모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자료를 최대한 좀 확보해서 가지고 다음 논의 때 제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최대한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자료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차관님, 이거 2018년부터 입법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이게 제정법인 경우에는 사실 공청회 같은 경우도 거치고 그게 원칙이고요. 이게 그 정도의 숫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론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소위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슈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2018년부터 법무부에서 입법 작업을 해 오시면서 공청회를 열었거나 아니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무슨 연구용역 같은 거를 주셨거나 하는 그런 자료들 좀 과거 거라도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도 상당히 입법정책 관련해서 세미나 등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참고로 이게 외국 대사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우리 정부에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15시26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법안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과 윤상현 의원님 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건의 내용은 주로 여기 3페이지 보시면 형사재판에서 불출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현행법의 공시송달재판뿐 아니라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불출석한 때에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심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윤상현 의원님 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

는 사건,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일정한 요건하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한 형사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불출석재판을 확대하면 피고인의 신병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으나 해당 피고인에게는 방어권 보장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가치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박균택 의원님 안과 윤상현 의원님 안은 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과 2항, 3항, 4항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6페이지의 제5항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님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좀 더 상세하게 경우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련 법률은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장기 10년을 초과하여 박균택 의원안에 따를 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는 범죄는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재심사유 추가 관련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불출석재판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박균택 의원님과 윤상현 의원님 안 2건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문은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칙은 박균택 의원안 부칙과 윤상현 의원안 부칙은 1조(시행일)과 2조 경과조치·적용례가 따로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등을 막고 사법정의의 신속한 실현을 기한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진행 단계나 피고인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크고 절차 보장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불출석재판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도망하여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정당한 형벌권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입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불출석재판 대상의 구체적 범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민생 침해 사범들입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법정형의 상한만을 기준으로 불출석재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가 몰각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도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특별히 필요한 일부 민생사건의 경우에 장기 10년 초과 사건에도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11페이지에 재심사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지만 이거를 지금 상소권회복청구로도 다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재심사유까지 또 둘 필요가 있을까, 상소권회복청구로 가능하다면 재심을 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법원행정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심까지 추가한 것인데요,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쟁점이 지금 그 부분과 대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적용례를 어떻게 할지 경과조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님 안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5항을 추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균택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박균택 위원** 법무부 그리고 법원행정처만 합의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어느 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지금 윤상현 의원님이 추가하신 이

5항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재심 부분에 관해서 각규택 위원님 말씀, 현행도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불출석재판의 경우에.

○**소위원장 김용민** 현행에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래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현행에 있기 때문에, 현행에 있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서 정리해 주는 거지요, 신설이 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용례는 지금 13페이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님 안으로 가자는 게 법원행정처입니까? 박균택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윤상현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법원행정처는 지금 박균택 의원님 안의 경과조치 2조를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윤상현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그러면 두 기관은 다 윤상현 의원님 안으로 적용례는 정리하자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이 다 정리됐지요?

○**나경원 위원** 지나갔지만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더 논의가 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이거 의결하고 어차피 다음번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나경원 위원** 아니, 뭐 좀 하나 조사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 마찬가지로 이게 피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운용 과정에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14.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1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16.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1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18.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20.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21.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22.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23.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24.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25.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26.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27.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15시36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6항 및 제20항부터 27항까지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15항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17항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18항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19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아까 나경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나경원 위원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아동의 경우에 외국 입법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해외 사례, 특히 미국 사례를 좀 정리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봐 주십시오.

지난번 소위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자료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소위자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와 위원님들의 토론 요지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부칙의 소급효 관련해서 공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그 부분을 조문대비표 옆의 비교란에 추가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추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소액·다수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일반으로 확대하는 규정 및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구체적 의견은 부문별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 날 광구택 의원님실에서 주최로 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관련된 소송이 중앙지방법원에 19만 명, 동부지방법원에 6만 명 그래서 그것만 해도 25만 명 소비자피해구제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사태가 났을 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도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들이 광고를 내서 소송하시오 하면 같이 모아 가지고 소송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예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집단소송의 경우에?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중앙법원·동부법원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다른 법원까지도 제대로 조사한다면 그 수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럴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원에서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도 본인이 관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조배숙 위원 피해자가 유출된 게 한 3200만이라고 합니까, 쿠팡의 경우에? 저는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 일일이 모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행법 체계하에서 해라,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집단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옵트아웃 방식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조배숙 위원 옵트아웃 방식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미국식인데 본인이 관여하지…… 나는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해 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집단소송 해서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게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조배숙 위원 과연 그런 해결 방식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의 방법 내

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지 소급효라는 이런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 법이 쿠광을 표적으로 한 무리한 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양참이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한테도 서한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단소송,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급효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쿠광 이외에 다른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계를 작성해 가지고 해 봤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까지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면 그 손해가 엄청나 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완전히 파산 직전 이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급효는 진정소급효나 부진정소급효나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총원 범위를 확장해서 그 총원 전체한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그런 게 되는데 권리 적용 범위가 일반 손해배상 범위까지 확대가 되고 소급효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6만 명의 판결과 기판력이 서로 저촉될 염려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소송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는,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옹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옹트아웃 방식.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자꾸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차·2차·3차 상법 개정을 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경영판단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배임죄니 뭐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랄지. 지금 자꾸 집단소송법은 미국에도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기업을 규율하는 원칙,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고 같이해야지요.

미국은 분명히 기업에 대해서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주고 있어요, 고용의 유연화랄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랄지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랄지 온갖 규제는 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것은 쳐다도 보지 않고 집단소송법 같은 규제만 이것 미국식이니까 해야 된다고, 이걸 좀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영판단원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로 상당히 오랜 기간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상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배임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에서 배임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식과 독일·일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들이 독일과 일본보다는 미국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무이행확인소송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본확인소송을 통해서 공통된 쟁점을 정리하고 그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이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이 그렇게 활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보상의 수준이나 또한 소송에 걸린 시간 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차관님, 배임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새로 만들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소급이라는, 헌법적인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의 경우에…… 최근에 AI 소송 이런 게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이런 데서. 그래서 소송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간소화되고 AI가 대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쿠팡에 대한 소송을 AI를 이용해서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개별소송으로 법원에 접수를 한다, 지금 현재 만약에 하고자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변호사 사무실의 AI를 이용한 소송 실무까지는 제가……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소송이 간편해져 가지고 원고 모집이나 피해자 모집이 용이해져서 예를 들어 개별소송으로 수백만 건이 접수된다, 그것은 현재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전현희 위원 AI를 이용해 수백만 건의 원고 접수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데 소송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사실상 개별소송을 단체로 접수해서 하는 거랑 집단소송으로 하는 거랑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것은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효 문제가 없는데 집단소송으로 소송의 형식·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건 소급효가 문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 법률 체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는 적어도 자기가 위임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소송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단소송법 안에 따르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총원의 범위에 들어가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그런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것은 당사자가 나중에 ‘나는 이 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소멸시효의 취지 그리고 집단소송의 취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권리를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이게 권리의 본질에 관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실관계가 완료되지 않고 법률관계가 완료되지 않은 일종의 부진정소급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단소송법이 소급효에 해당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명이, 수백만 명이 아니면 정말 수천만 명이 이론적으로 개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무런 소급효 문제가 없는데 그걸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에 의한 소송 제기는 소급효가 있다 이 자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교수님이, 전에 공청회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집단소송법이 통과되지 않고 AI를 통한 개별소송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접수되면 아마 법원이 먼저 집단소송법 통과시켜 달라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논리에 매달릴 필요 없이 현재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그리고 권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부진정소급효가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소송법도 충분히 위헌이 아니라 가능하다, 저는 법원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드린 기관력의 저축 문제 외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장기간 운영해 온 결과 사실 원고의 범위, 총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과 불복을 거쳐서 1심 판결 전에 그 총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라는 그런 한 가지 유형에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더군다나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실무상의 혼란과 또 소송의 장기화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정작 자기가 권리를 구체받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소송으로 총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실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자기가 어느 사이에 총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판결이 나왔는데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배상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권리를 구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그런 실무상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원이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소송 실무 그리고 소송허가제 이런 것, 원고적격 판단하는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법원의 어려움 이런 것을 오히려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또 어차피 지금 해외에서도 집단소송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게 도입이 안 된 그런 법이다, 제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이게 소급효다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좀 궁색한 논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법원에서 입장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광규택 위원님 토론하실 시간인데 아까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한 것처럼…… 아마 종료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이미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규택 위원님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고, 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광규택 위원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광규택 위원** 제가 월요일 날 의원실에서 주로 교수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요 그 자리에 법원에서 나오시고 또 법무부에서 담당 검사님도 나오셔서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우려가 있는 말씀만 조금 전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처럼, 박근혜 의원님 안처럼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면서 손해배상 유형에도 제한이 전혀 없고 소급효까지도 인정하는 이런 최강의 가장 센 형태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방금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권리가 그냥 집단소송으로 확정돼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 유형으로 하면서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집단소송제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 국가나 또는 지자체의 어떤 손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소송의 대응에 가장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하는 우려들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배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은 사실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등 기업의 자율은 최대한 보장을 해 주면서, 다만 손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집단소송제라는 것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만 유일한 제도이면서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각종 행정적인 규제 또 사후적인 형사 규제 이런 것까

지 있으면서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회의자료 103페이지에 보시듯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급 적용에 따라서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했던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된다’ 하는 이 의견은 정말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기업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사후적인 입법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기업의 존망이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철학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다른 오프아웃 방식을 택하고 손해배상 유형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하더라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님, 이게 사실 광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단소송 도입으로 자칫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주는 예를 보면 망할 일이 있을 정도로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는 경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이 손해를 인정할 때, 특히 위자료를 인정할 때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수준의 위자료 기준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어차피 오늘 처리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는 다음번 심사 때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기관력 말씀을 하고 계시니. 최근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됐고 논란이 많이 됐던 쿠팡 사건과 SKT 사건에서 현재 소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진행되는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그리고 확정된 사건은 그중에 있는지,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지금 이 논의할 때 차장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기관력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소송 규모와 확정된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논의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회의 때 회의장에서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결을 하고 싶긴 하지만 도저히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전현희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